대구 동인동 센트럴 대원칸타빌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CANTAVIL 칸타빌

■ 센트럴 대원칸타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www.daegu-cantavil.co.kr) 및 사전예약 관람을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을 최소화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방문가능일자를 확인하시고 사전방문 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검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해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계획 중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 아래의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에 따라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검수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견본주택 방문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검수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과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053-427-0120)를 실시 할 예정이오니,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자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께서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9.21.(월)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수성구 제외)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경우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고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 및 분양권등 산정 관련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청약 신청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통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 배정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0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청약불이익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자 중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청약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gu-cantavil.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이후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이후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었다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구도시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합니다.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구도시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해서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공급을 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의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여 입주자선정지위는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8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는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일정	2020.10.06.(화)	2020.10.07.(수)	2020.10.08.(목)	2020.10.15.(목)	2020.10.19.(월) ~2020.10.25.(일)	2020.10.27.(화) ~2020.10.29.(목)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장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방문접수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검수접수 과열 시 일정 및 운영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389-4번지 ※ 일반인 입장 불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주택과 – 39055호(2020.09.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77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4층 ~ 지상43층 3개동 총 4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본 건축물은 주거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됨.)
특별공급 173세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41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40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81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1세대 포함]
■ 주차대수와 지하층 층고 : 610대중 545대 / 지하1층(6.0M), 지하2층(3.5M), 지하3층(3.5M), 지하4층(3.5M)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231g
■ 입주시기 : 2024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택공급면적: 주거공용면적	주택공급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계	일반분양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세대수
2020001111	84.7824A	84.7824	32.8799	117.6623	49.1984	166.8607	15.6678	246	25	24	49	7	105	141	6
	84.4267B	84.4267	33.3573	117.7840	48.9919	166.7759	15.6020	164	16	16	32	4	68	96	4
합 계								410	41	40	81	11	173	237	10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층별	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공급금액: 건축비	공급금액: 계	계약금 계약시 (10%)	중도금 1차(10%) 2021.5.10	2차(10%) 2021.11.10	3차(10%) 2022.5.10	4차(10%) 2023.1.10	5차(10%) 2023.6.12	6차(10%) 2023.11.10	잔금 (30%) 입주시
84A	2층	6	126,528,589	359,471,411	486,0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3층	6	126,528,589	371,471,411	498,0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49,400,000
	4층	6	126,528,589	383,471,411	510,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53,000,000
	5~9층	30	126,528,589	398,471,411	525,0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57,500,000
	10~29층	120	126,528,589	407,471,411	534,0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60,200,000
	30층이상	78	126,528,589	418,471,411	545,0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84B	2층	4	125,997,745	360,002,255	486,0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3층	4	125,997,745	372,002,255	498,0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49,400,000
	4층	4	125,997,745	384,002,255	510,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53,000,000
	5~9층	20	125,997,745	399,002,255	525,0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57,500,000
	10~29층	80	125,997,745	408,002,255	534,0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60,200,000
	30층이상	52	125,997,745	419,002,255	545,0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칙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7824A	84.4267B
약식표기 주택형	84A	84B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설치비용은 미포함되어 있으며 청약접수 이전에 분양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상가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대지면적을 공동주택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정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여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되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거나 변경되는 토지대금 조세(종합부동산세 등)는 분양대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에서 실시하는 ... 중도금의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계약자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표시사항의 주요 공급금액 ...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방법, 구비서류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기복무군인·장애인·중소기업근로자)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청약신청 가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1)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1회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은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른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당첨되는 경우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청약 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어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에 따라 특별공급 서류접수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하는 날에 맞추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감정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84A	84B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보훈처 추천)	7	4	11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6	4	10
	장애인	6	4	10
	중소기업 근로자	6	4	10
	소 계	25	16	41
다자녀 특별공급	–	24	16	40
	소 계	24	16	40
신혼부부 특별공급	75%	37	24	61
	25%	12	8	20
	소 계	49	32	81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7	4	11
	소 계	7	4	11
합 계		105	68	173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범위) : 41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선정자로 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해당기관 추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주택건설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및 추천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추천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범위) : 40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재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만19세가 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됩니다.[임신의 경우 서류 접수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태아나 입양자녀를 포함하여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된 경우, 출생증명서나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전매 요청 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으로 인한 경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해당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시 동점자 처리(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 포함)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배점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기간은 5년부터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으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녀를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범위) : 81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만족 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재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경과)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입양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어 계약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급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의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 당첨자 선정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포함)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1)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제1순위와 제2순위를 선정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와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함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입양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공급계약)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분양권전매 요청 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 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합니다. – 종교기관의 사찰 등이 신청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자료로 준용 합니다.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의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는 전년도 계속하여 직장에 근무,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금년도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인 경우, 전년도 재직증명서 또는 휴가일 확인 중 근무개월수 및 휴직 기간(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을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합니다.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자료조회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합니다.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120% 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130% 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30% 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도 가구 소득에 포함합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에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원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일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3%범위) : 11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1)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1)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조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른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1)이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한자 또는 경상북도 거주자 중 당첨자를 선정 합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해 산정된 점수를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로 인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견본주택 비치,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 존·비속	피부양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직계비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의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건강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1)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본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 합니다.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상기 제출서류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견본주택(053-427-0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 공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1)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미성년자 중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는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이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공급 신청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3항에 따라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재당첨제한 되는 민영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기준 예치금 이상 청약가능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 됩니다.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청약 가능합니다. (1순위 및 2순위 청약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청약 가능)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5.12.29)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및 청약 관련 예금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1)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가입하는 청약예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2순위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이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합니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청약 가점항목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 가족수 산정)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 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출입국사실 증명원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총 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만 포함됩니다.

■ 청약신청 접수방법
•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는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 배정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란 용어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합니다.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다운로드)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항)을 미리 알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 비 사 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은 해당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1)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 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신청자 본인이 신청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③ 청약부금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에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 당첨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2순위 청약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당첨자로 해약 조치되오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Ⅲ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 장소	거주구분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 2020.10.06.(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센트럴 대원칸타빌 견본주택(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389-4번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일반공급	1순위	• 2020.10.07.(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 2020.10.08.(목)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서류를 대조하여 부적격당첨자 처리에 대한 제반 사항은 당첨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일시 : 2020.10.15(목)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0.10.27.(화)~2020.10.29.(목) 10:00 ~ 17:00 • 장소 – 센트럴 대원칸타빌 견본주택(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389-4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형, 주택명,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사유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로그인하여 당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자 조회가 불가하오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부적격자로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 됩니다.(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 계약체결 시 상기 장소에서 계약을 하셔야 하며 그 외 장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계약장소 및 일시 변경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10.15. ~ 2020.10.24. (10일간)
인 터 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합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10.15.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 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 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 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 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가주택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 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더라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구도시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구도시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 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유의사항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는,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는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 특별공급 당첨자가 일반공급에서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착오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경우 아파트 당첨 및 계약 시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은 납입할 계약금을 제외하고 이자 없이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의거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소유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소유권 변경 등의 경우 아래의 일자 중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정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특별공급은 주택소유로 봄)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제외 합니다.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여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제4항에는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④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습니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공급 순차별 지역순위(주택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로 이하 이 항에서 같습니다.) 이 해당 순위의 입주자로 선정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Ⅴ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계 약 시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시	공통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본인만 가능, 대리인 계약불가),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합니다.)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합니다.
		○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 주민등록표등본 1통[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및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주민등록표초본[전입발생일,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출입국사실증명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		– 가족관계증명서 1통(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합니다.)
			○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인자에 한합니다.)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1부)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직계 존·비속의 출입국사실증명원 1부 (피부양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직계존속), 과거 1년(직계비속))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합니다. –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1)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할 경우, 계약서류를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외국인의 신분사항 확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공급신청서류 동일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단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2005. 06. 28.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신청서 제출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부적격자로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은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할 경우, 사업주체에서 판단하여 한국감정원에 당첨자명단에서 제외 요청할 예정이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기재를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부양가점에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중복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자격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여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분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 기관의 심의 결과 및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5항 및 제57조제5항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는 추첨에 참가하여 ...
• 발코니확장 계약 체결을 미선택한 세대에서는 설계상 기본품목으로 시공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발코니확장 계약, 플러스옵션 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계약자의 상담을 선택할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약자의 의도와 다르게 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 상의 공정 등을 이유로 계약자에게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합니다. 이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을 거절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가 통지된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신한은행	100–034–763560	㈜대원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2동503호 홍길동 →10205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한 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서 제출서류 확인 결과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은 상기 분양대금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일에 납입하고, 중도금, 잔금에 대한 통보를 ...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일 만큼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협약대출로 ...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개별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전에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미납부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할 경우,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사업주체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 환불 예정입니다.

■ 중도금 납부 및 대출 알선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이자후불제"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분양가 9억원 이상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며 자납하여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 조건 ...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중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6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입주 예정일이 지연될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Ⅵ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등

■ 추가 선택 품목은 입주자의 선택사항으로 추가 선택 품목의 금액 및 물품등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임의 결정한 금액이며, 분양승인대상(분양가상한제 비대상)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안내
• 발코니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계약체결시 아래의 계좌로 공급 계약금액을 입금하여야 함.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발코니확장비용	신한은행	100–034–763668	㈜대원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 발코니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옵션시사항은 신한은행은 상기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102동503호 홍길동 →10205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비용 납부방법은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30%) 2021.5.10	잔금(60%) 입주지정일
84A	25,000,000	2,500,000	7,500,000	15,000,000
84B	25,000,000	2,500,000	7,500,000	15,000,000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만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비확장 세대와 비교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프레임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와 세대간 발코니 확장 시 ... • 발코니 비확장시 ...
• 발코니 확장은 일괄 확장으로 ...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 발코니 하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 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에 따라 발코니 전면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하는 경우 주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에 대피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관한 입증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의 해석상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안방 발코니 세대는 단열창호(도어)가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전체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 또는 부분 확장세대는 전체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깊이 및 개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합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갤러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일부,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제조사 : LG전자(단위 : 원, VAT포함)

타 입	구 분		대수	적 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1.5.10.	잔금(80%) 입주지정일
84A,B	ALT1	일반형	3	거실+주방+안방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ALT2		5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ALT3	고급형 (공기청정기)	3	거실+주방+안방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ALT4		5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확장옵션 선택시 설치가능하며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기타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추후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기준층 진행 전)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전용 콘센트 및 냉매배관용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 공사비용은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에 차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방전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기능이 있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입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등 2개소의 냉매 매립배관이 제공됩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계약세대는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으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이 불가하나 전실은 설치가 불가하며, 부분 설치만 가능하고 이 경우 우물천정이나 조명기구의 위치 및 형태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기능 및 미관상의 민원이 하자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 에어컨 선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인테리어 등에 의해 금액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위치에 따라 조명기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위해 우물천정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시공시 각 실에 설치되는 실내기와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귀속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당 세대는 건축공정에 따라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배관(거실 및 안방)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 및 배관 경로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기 부착 산정시의 면적은 실주거 공간 면적으로 하며, 일반가구, 주방가구, 드레스룸, 욕실, 현관 등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 실내기 용량의 합과 실외기 조합 비율은 120% 이하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단위 : 원, VAT포함)

타 입	품 목			공급가격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84A	미세먼지 방충망	거실(1개소)		610,000	61,000	549,000
		전실(5개소)		1,700,000	170,000	1,530,000
	현관 중문			900,000	90,000	810,000
	천정형에어샤워(그렉스)			500,000	50,000	450,000
	현관장 멀티클리너(하츠)			300,000	30,000	270,000
	아트월			1,500,000	150,000	1,350,000
	바닥마감	폴리싱타일		1,200,000	120,000	1,080,000
	주방벽 마감	엔지니어스톤		1,400,000	140,000	1,260,000
	쿡탑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300,000	30,000	270,000
		인덕션3구		500,000	50,000	450,000
	전기오븐	최고급형		2,000,000	200,000	1,800,000
	반침장	TB냉장고+키큰장		5,400,000	540,000	4,860,000
		BI김치냉장고+냉장고장		1,250,000	125,000	1,125,000
		TB냉장고+BI김치냉장고		6,650,000	665,000	5,985,000
		의류관리기		1,200,000	120,000	1,080,000
		붙박이장(수납형, 침실1)		1,000,000	100,000	900,000
		붙박이장(파우더형, 침실2)		1,000,000	100,000	900,000
84B	미세먼지 방충망	거실+주방(2개소)		750,000	75,000	675,000
		전실(8개소)		2,170,000	217,000	1,953,000
	현관 중문			1,500,000	150,000	1,350,000
	천정형에어샤워(그렉스)			500,000	50,000	450,000
	현관장 멀티클리너(하츠)			300,000	30,000	270,000
	아트월			1,500,000	150,000	1,350,000
	바닥마감	폴리싱타일		1,200,000	120,000	1,080,000
	주방벽 마감	엔지니어스톤		1,400,000	140,000	1,260,000
	쿡탑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300,000	30,000	270,000
		인덕션3구		500,000	50,000	450,000
	전기오븐	최고급형		2,000,000	200,000	1,800,000
	반침장	TB냉장고+키큰장		5,400,000	540,000	4,860,000
		BI김치냉장고+냉장고장		1,250,000	125,000	1,125,000
		TB냉장고+BI김치냉장고		6,650,000	665,000	5,985,000
		의류관리기		1,200,000	120,000	1,080,000
		붙박이장(파우더형, 침실1)		1,000,000	100,000	900,000
		붙박이장(수납형, 침실2)		1,000,000	100,000	900,000

■ 옵션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옵션품목은 계약체결 전에 아래의 계좌로 공급 계약금액을 입금하여야 함.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품목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옵션계약금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4–763668	㈜대원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 옵션품목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503호 홍길동 → 101503홍길동)
• 옵션품목비용 납부방법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Ⅶ 기 타

■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 공부상(관공서의 법규에 따라 작성, 비치되는 양식에 의거) 주소체계에도 아파트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본 면적의 대지는 추가와 비추가세대의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대지분할 및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주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측량에 따라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의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계약자께서는 사업현장 및 주변환경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이로 인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각종 광고에 표시된 내용 중 주변 여건 및 각종 개발예정 사항은 해당 개발 주체 및 관계 기관의 계획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모형 등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측정결과 및 각종 평가결과 등은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 등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및 계약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평면설계 및 마감재 등을 촬영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PL창호(프레임, 유리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PL창호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단지 주변현황, 주변도로 등 입주자 인지사항이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전시되어 있으니,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은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입주자 설명서 및 견본주택 내 상담원의 설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조명,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강제환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 관련법규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서 세대별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제작된 것을 기준하여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형 ...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마감재 및 배치 등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계약품목 또는 분양계약자의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발코니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실내로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 기 설치된 대피시설의 구조변경 및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할 경우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를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를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는 결로방지 설계 기준에 의거하여 단열재가 추가로 설치되며, 천장고와 실내용 면적이 축소되며, 가구, 가전, 설비기기 등 개소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생활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별도의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개별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을 대출하고 잔금을 완납 후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를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법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설계 변경된 부분을 하자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계단실 상부, 단열, 단열재, 단열재 등 다소 이동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 및 마감재와 외부상세계획 등의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상 등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급배기 휀, 태양광 설비, 소화수조, 소화펌프, 소화수조, 통신탑, E/V기계실 및 기타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사생활 등에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시설물 위치 및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상층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진동, 조망, 일조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관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입면 위치, 각종 시설물, 조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쓰레기 수거처,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로 인한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 및 상품 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옥탑, 측벽, 문양, 지붕, 필로티, 공용홀, 동출입구, 캐노피, 지하출입구 등) 및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수거장, 조경 등)의 형태, 마감재 및 색상은 심의 및 협의,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 배치 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정화조배기탑 및 쓰레기수거장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이의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청약신청 및 입주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 및 불빛에 의해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시 주동주출입구와 거리가 먼 일부 세대는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증설 전 사전 아파트 ...
• 계약체결 후 ...
• 마감재의 사양은 타회사 모델하우스 및 실제 시공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사유로 인하여 품절, 품귀, 부도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화 설계는 단지 경계와 인접해 있어 세대 내 일부 조망 및 일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
• 본 아파트의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본 아파트의 하자 처리, 일조권 침해 ...
• 분양계약자는 입주시까지 주거, 면적 또는 주택의 규모 ...
• 본 아파트의 옥탑부 ...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각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산정하여 결정한 공급대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사업승인시 해당관청에 제출한 총사업비 규모로 ...
• 주택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외부여건
• 단지주변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개축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의 도로는 주변 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입주시기에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항은 ...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계획사항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근학교 학생배치는 ...
• 동대초등학교는 ...
• 사업지 내부에 설치되는 공공보도는 향후 공공시설로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에 기부채납되며 ...
• 단지 내 학생 배정은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과, 053-231-0705 ...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와 다를 수 있으며 계획 및 예정사항이 변경될 경우 당사가 ...

■ 단지내부여건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어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
• 외부의 마감재,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건축심의 결과 및 ...
• 단지 내 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
• 지하주차장 주출입구는 대지현황,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 ...
• 옥상은 개인적인 ...
• 단지 내 도로 ...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
• 지하주차장은 지하4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유효 천정고(보하단부터 바닥마감까지 높이)는 h=2.8m(지하1층 3.1m)임. (택배차량은 지하1층 주차장 진입이 가능함) 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정고는 일부 구간 변경될 수 있음. • 비주거용 정화조 배기는 ...
• 지상 동출 D.A는 ...
• 단지 북측 옥상에 설치되는 타워 ...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
• 본 사업부지는 공공 ...
• 아파트 주차장은 지하1~4층에 배치되며,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 1층에 배치되며,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은 같은 주차장을 공유합니다.
• 당 단지는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 건축물로 ...
• 전기/통신, 엔등 ...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동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와 색상 및 외부창호 색상이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 사다리차가 전개되는 구간은 조경시설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옥상녹화구간은 비이용성 경량형 옥상조경으로 조성되어 진입, 조회하고 미관되어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 외부 마감재 사양은 현장협의 및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현장 마감재 사양에 대해 당사 기현장과 비교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층세대의 외부 마감재 설치에 따라 ...
• 동별 옥상에 소방용물탱크실과 소방용펌프가 있으며, 가동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별1층에 소방용 제연팬룸이 있어 가동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옥상에 주거용 정화조 배기휀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동 옥상의 통기관으로부터 악취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아래 사항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지하 1층 주차장,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계단실, 공용관리실의 경우 사용범위에 따라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가 면적을 전용면적 비율로 나누어 공유하고 있으며, 비율 및 면적에 따라 영역 구분이 불가능하며,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 불가합니다. 계약자는 정확한 공유부분 및 면적을 계약 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당사 기준에 따라 모든 면적(분양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4. 대지지분은 소수점 4자리 이하는 버림으로 하며, 세대의 전유부분의 근린생활시설 1개 호실(101호)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5.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본 단지의 대지는 주거와 비주거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대지분할 및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디자인
1.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선홈통은 발코니, 실외기실 등 PD 내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모든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위치 및 수량, 재질, 문양(디자인) 등은 현장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이는 사용상 하자가 아니므로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7.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설치되며,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본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 및 일반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주방 상부장 뒤쪽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10.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11. 화장실 바닥 높이 및 천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거실 ...
12. 세대 내부실 사실 등 ...
...
(이하 세대/디자인 1~57항, 단위세대 1~39항 등 세부 유의사항 생략 없이 원문 참조)

■ 단위세대
1. 견본주택에서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거나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에 이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주방,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시 제외 품목입니다.
3.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특허권 등 부득이한 경우 동질 및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마감재의 특성상 제품별 색상과 문양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세대/규격
1.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세대내 거실의 아트월 설치,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바닥재 포함)은 인테리어 특성상 연출되는 이미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자 선택사항에 따라 세대 내부의 마감재 및 가구의 마감치수(두께, 폭, 넓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설계도면에 미표기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체'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등에 있어서 동등 이상이라고 승인하였을 경우 설계도면에 표시된 제품과 제조회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사양서 등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찬향의 경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분양자 등을 상대로 ...

■ 제공/전시품목
1.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장식은 본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입니다.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모델하우스 자체의 소방시설입니다.
4.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외벽의 리본(출눈)형태 및 지붕모양, 형태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설계 조건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는 품목 중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과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6.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7.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주변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 소유주 등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8.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커뮤니티시설
1.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5. 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커뮤니티시설(주민공동시설 등) 내부에 표현된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기기 및 비품 등)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주민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품목만 시공하므로 그 외 기타 시설,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및 운영,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실제 시공될 시스템 등 설치품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며, 지층의 특성상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결로 영향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주택(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 부대복리시설은 오피스텔과의 부대시설과는 공부상 구분되어 있으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효율기자재	적용	전동기 / 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 침실 / 주방 :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각 1개소에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고효율조명기구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각 실 :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입주민회의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내 GX룸1개소)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부가세 별도)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원)	비 고
건 축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930,330,000	
전 기	㈜신화에프이씨	509,192,445	
소방 / 통신	서한컨설턴트(주)	750,000,000	

Ⅷ 기타 계약자 안내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보증서 발급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분양보증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0-101-0009600호	₩ 153,188,0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주)분양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구 분	내 용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자의 추측 가능한 날 중 1일 이상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계약이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합니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채권자가 보증회사에 입주금의 납부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도래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의 대출금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입주금. 다만, 사양선택 품목의 공사 비용 및 사용 ... 을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등이 보증회사와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로부터 받을 금액을 대체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시행자, 시공회사, 분양대행사

구 분		시행자, 시공회사, 분양대행사
시행사	상 호	㈜대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15(송정동)
	법인등록번호	150111–0003058
시공사	상 호	㈜대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15(송정동)
	법인등록번호	150111–0003058
분양대행사	상 호	대영에코건설(주)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17길 8, 3층
	법인등록번호	176011–0022133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389-4
■ 분양홈페이지 : http://www.daegu-cantavil.co.kr
■ 분양문의 : ☎ 053-427-0120
■ 견본주택 위치도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53) 427.0120

www.daegu-cantavil.co.kr 시행 시공 대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389-4번지